

동업계약서

아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■ 동업자 및 출자 내역

성명	생년월일	출자형태	출자 평가액	지분율	담당 역할

사업체명		사업 개시일	
사업장 소재지		사업 종목	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출자·지분·업무분담·손익분배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출자)

각 동업자는 위 표에 기재된 출자를 계약 체결일부터 일 내에 이행한다.

노무 출자는 그 평가액과 최소 근무조건을 위 표 및 별지에 명시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분을 재조정한다.

제 3 조 (지분)

지분은 위 표에 따르며, 추가 출자·증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전원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.

동업자는 다른 동업자 전원의 서면 동의 없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4 조 (업무집행과 의사결정)

일상적인 업무는 각자 담당 역할에 따라 집행한다.

다음 사항은 동업자 전원의 서면 합의로 결정한다. 신규 차입, 자산의 처분, 신규 동업자 영입, 사업 종목의 변경, 금원 이상의 지출.

그 외 사항은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.

제 5 조 (손익의 분배)

손익은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며, 분배 시기는 매 개월마다 결산 후 일 내로 한다.

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는 활동비는 손익분배와 별도로 하며 그 금액은 전원 합의로 정한다.

제 6 조 (회계와 열람)

사업의 회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모든 수입·지출은 증빙을 보관한다.

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장부와 증빙의 열람·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경업금지)

동업자는 계약 기간 중 및 탈퇴 후 년간 동일·유사한 사업을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영위하지 않는다.

제 8 조 (탈퇴와 정산)

동업자는 개월 전 서면 통지로 탈퇴할 수 있다.

탈퇴자의 지분은 탈퇴일 기준 순자산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개월 내에 정산한다. 평가에 이견이 있으면 쌍방이 합의한 회계사의 평가에 따른다.

잔존 동업자는 탈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.

제 9 조 (제외)

동업자가 출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·배임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을 한 경우 다른 동업자 전원의 합의로 제외할 수 있다.

제 10 조 (해산)

사업의 해산은 동업자 전원의 합의로 하며, 잔여재산은 채무를 변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.

제 11 조 (분쟁해결)
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,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■ 특약사항

상표·특허 등 지식재산의 귀속, 가족의 사업 참여, 배우자 동의 여부 등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십시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업자 수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1 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구분	성명	주소	서명 또는 인
동업자			

※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. 출자금이나 지식재산이 관련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.